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9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의 규정에 의거,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학대현장에서 긴급분리하여 임시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임
- 나. 기존에 연령 구분 없이 운영 중이던 피해장애인 쉼터는 성인 장애인 전용 쉼터로 운영하고, 신규로 학대 피해장애아동 전용 쉼터 2개소를 설치·운영하여 피해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의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남아·여아 전용 쉼터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라. 쉼터 입소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 인권 감수성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도, 아동 특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장애인 및 아동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5년(2022.11.01. ~ 2027.10.31.)
- 위탁사무 :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 통합 운영·관리
 - 긴급보호 :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개별상담 : 입소 장애아동 개별상담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 치료지원 : 입소 장애아동 대상 상시 의료 지원체계 구축
 - 교육지원 : 장애아동의 정서안정·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사후관리 : 퇴소 장애아동 재학대 발생 여부 지속 모니터링
 - 그 밖에 입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자 선정방식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2.7.26.)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운영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필요성
 -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21.3.30.)으로 장애아동 학대사례 매년 증가 추세에 따라, 피해장애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
 - 기존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장애아동 수용 여건이 부족하며, 피해장애인 쉼터는 연령 구분없이 운영되어 입소 장애아동 2차 인권침해 발생이 우려됨

- 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권 감수성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도, 아동특성에 대한 기술·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센터 운영 민간위탁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7]

제43조7(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별표 5의4]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제43조의7 관련)

1. 시설기준

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100㎡ 규모 이상으로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아동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업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가 있는 부지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인력기준 : 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

3. 운영기준 : 입소정원 4명(남녀 전용), 주 7일, 24시간 운영

나. 예산조치 : 민간위탁금(221백만원) 확보 협의 중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박소영 (☎ 2133-7362)